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☐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8일☐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 2. 위원회 회부

☐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☐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16일

&lt;제1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&gt;

## 3. 개정사유

☐ 도로법시행령 상 점용료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골자

☐ 점용료의 종류 중 “공중전화”를 “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으로 개정(별표의 제1호)☐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공작물·물건 및 시설란의 “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 0.005”를 세분하여 “농업 및 식물재배 0.01, 주택 0.025 로 개정(별표의 제10호)☐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·길이 등을 산정 할 때 1m'(또는 1m)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.5m' (또는 0.5m)이상 1m'(또는 1m) 미만의 경우에는 1m'(또는 1m)로 계산함(별표 비교의 제3호)

## 5. 검토의견

☐ 2002년 5월 6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(별표2)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임☐ 개정안에 의하면 점용료 산정기준 중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5배까지 점용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점용료가 10%이상 증가될 시에는 조정계수를 적용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별 점용료는 20%~30%정도가 상승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점용료 납부에 따른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

## 6. 참고자료(관련법규)

☐ 도로법

제43조(점용료의 징수)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도(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(개정 '93.3.10, '99.2.8)

## □ 도로법시행령

제26조의2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(개정 '99.8.6)

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본조신설 '93.8.14]

[별표2] (개정 1999.8.6, 2002.5.6)

점용료산정기준표(제26조의2제1항 관련)

(금액의 단위 : 원)

| 점 용 물 의 종 류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준 단 위    |      | 점 용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용단위       | 기산단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9.(생략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 | 농업 및 식물 재배<br>주택<br>기타 | 점용면적<br>1㎡ | 1년   | 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br>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<br>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
## ※ 비 고

1. ~ 3. (생략)

4.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0.5㎡ 또는 0.5m 미만의

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, 0.5㎡ 이상 1㎡미만

또는 0.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㎡ 또는 1m로 계산한다.

5. ~8. (생략)